

인천지방법원 2019. 4. 9 선고 2018가단2483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에대한말소등기절차이행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 2019. 3. 26.

판결 선고 2019. 4. 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85. 12. 26. 접수 제9393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손광진

별지